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개별법 일괄 정비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60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정부 제출(220216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1
Ⅳ. 일괄개정안의 제안 배경	4
Ⅴ. 검토의견	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검토의견	7
가. 개정안의 내용	7
나. 검토의견	8
다. 국토교통부 의견	13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
가. 개정안의 내용	14
나. 검토의견	16
다. 국토교통부 의견	21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검토의견	22
가. 개정안의 내용	22
나. 검토의견	23
다. 국토교통부 의견	27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검토의견	28
가. 개정안의 내용	28

나. 검토의견	29
다. 국토교통부 의견	31
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검토	32
가. 개정안의 내용	32
나. 검토의견	34
다. 국토교통부 의견	38

□ 정부제출 대표발의(220216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부

나. 제 안 일 : 2024. 7. 23.

다.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3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4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5조)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

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IV. 일괄개정안의 제안 배경

동 일괄개정안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된 1차 및 2차 과제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임.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의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법률·조항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부처별 소관 형벌조항 조사, 민간의견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대상 형벌조항을 확정하였고,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검토를 거쳐 개선 관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2022.8.26.)

과제 개선계획에서는 ①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향, ②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도, 보충성(先행정제재, 後형벌),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합리화하는 방향 두 가지로 개선방향을 정하였음.

[개선과제 유형(예시)]

- ❶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 징역, 벌금형 관련 조항 삭제 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 * (예시) 서류작성·비치 위반, 과대표시·광고, 행정조사 거부 등
- ❷ (합리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형벌 → 보충성 (先행정제재, 後형벌), 비례성 (위법 행위와 처벌간 균형) 등 원칙에 의거 합리화*
 - * 형량 완화, 책임의 정도(미수/기수 등)에 따른 형량 차별화 등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하지만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낮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과제로서 17개 법률상 형벌조항에 대해, 2차 과제로서 51개 법률상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은 1차 과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류정책기본법」, 「항공안전법」 등 3건의 법률은 2차 과제에 해당하여,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제재를 삭제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일괄개정안에 따른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법 안 명	구 성 요 건	경제 형벌규정	
			현 행	개 정
1차	자동차 관리법 <i>*비범죄화</i>	<u>매매용 자동차 소유자 반환 시 미신고한 자</u>	징역 : 1년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행정제재 전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i>*비범죄화</i>	<u>공사시행 인가 또는 변경인가 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u>	징역 : 1년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삭 제
2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i>*비범죄화</i>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 업계획에 반영된 <u>이행의무사 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u>	징역 : 2년 이하 벌금 : 2천만원 이하	행정제재 전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물류정책 기본법 <i>*비범죄화</i>	물류신고센터에 접수된 물류 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 해 해당 물류기업 등 이해관 계인에게 <u>자료제출 또는 보고 를 요청한 경우 이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한 자</u>	벌금 : 1천만원 이하	행정제재 전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항공안전법 <i>*비범죄화</i>	물류신고센터에 접수된 물류 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 해 공무원이 <u>사업장 등에 출 입하여 수행하는 조사를 거 부·방해·기피한 자</u>	벌금 : 5백만원 이하	행정제재 전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로, 지난 제21대국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41호, 2023.1.26. 정부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639호, 2023.1.26. 정부 제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2417호, 2023.5.31. 정부 제출)」이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V. 검토의견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일괄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준공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해야 하는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제2항1)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 ----- -----.
1. 삭 제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u>· 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u> 1의3. ~ 9. (생략) ②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 ⑤ (생략)	<u>· 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u> 1의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5조²⁾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 등을 하려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22조3)에 따라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함.

그리고 법 제24조의24)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및 관리자가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5개 특·광역시 준공시설물의 변경신고 수리 현황 >

지역별	총계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2021	63	40	12	8	2	1
2022	67	39	11	9	7	1
2023	58	25	13	7	7	6
합 계	188	104	36	24	16	8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행법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⁵⁾.

일괄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의 변경 신고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변경신고 미이행 행위로 인해 해당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한 실적은 없음.

미이행 행위는 행정절차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로도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의 검토를 거쳐 행정적 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고,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괄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6)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 19. (생략)

한편, 일괄개정안은 부칙에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⁸⁾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⁹⁾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⁰⁾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0)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다. 국토교통부 의견

준공시설물에 대한 이행의무사항 변경신고 누락은 행정절차 위반사항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의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도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동의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9조제1항¹¹⁾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제재(법 제17조제1항¹²⁾)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5조제1항)이 규정되어 있음.

일괄개정안은 이 중 형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3호 삭제).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과 그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점포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현행	개정안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삭제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 7. (생략)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복합물류터미널(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¹³⁾)은 도로·철도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동시에 갖춘 물류터미널로, 집·배송센터·화물취급장·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¹⁴) 등의 물류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정부 주도로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광역 물류거점[수도권(군포IFT·의왕ICD), 부산권(양산IFT·ICD), 중부권(세종), 호남권(장성), 영남권(칠곡)]에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추진하여 총 7개 시설을 구축한 바 있음(참고1. 5대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사업자가 이러한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9조15)),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13) 복합물류터미널(IFT) : 도로, 철도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수송을 위한 물류터미널

14)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해상컨테이너화물이 내륙으로 이동되어 내륙운송 수단과 연계되는 장소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과 그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점포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짐.

이러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현행법에서는 ①제17조제1항제5호¹⁶⁾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제재¹⁷⁾와 ②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법 제18조제1항¹⁸⁾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2]에 따르면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에 대해 ①1차 적발 시 경고, ② 2차 적발 시 30일 사업정지, ③ 3차 적발 시 40일의 사업정지에 처하고 있음.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등록취소(또는 사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 >

행정제재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법 제17조)	경고	30일 사업정지	40일 사업정지
과징금(법 제18조)	-	1,500만원	2,000만원
벌금(제6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 국토교통부

일괄개정안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위반행위에 등록 취소나 정지를 통한 행정처분 외에 벌금형까지 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되었음.

유사 입법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제38조19)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사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벌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20)).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과 민간전문가가 참가한 T/F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안된 경과 및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동 일괄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제 공사시행인가 위반으로 행정제재나 벌금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음.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7호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편, 일괄개정안은 부칙에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형법」 제1조제2항²¹⁾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르도록 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²²⁾에서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법률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과거 대법원은 소위 동기설을 취하여 법률의 변경에 관한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된다는 태도였으나,

21)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2)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022년 판례를 변경하여 법률 변경의 동기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동기설의 입장을 폐지하였음(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이를 고려할 때 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 확보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부적절하여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개정안과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둘 수도 있을 것²³⁾이나,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위반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공사시행인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 부과가 가능하므로, 형벌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시행인가 등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3)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4-895

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일괄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신고센터에 접수된 물류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해당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한 경우,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물류신고센터에 접수된 물류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해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행하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u>1의3.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1의4. 2. (생략) 제73조(과태료) <신설>	제71조(벌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의4. 2.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1.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u>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²⁴⁾에 따라 누구든지

24)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

그 사실을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37조의3제1항²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그리고 법 제37조의3제3항 및 제4항²⁶⁾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6)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이 제37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권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⁷⁾.

이처럼 현행법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벌금²⁸⁾을 과하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행정상의 의무 위반임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완화하려는 것임.

이는 자료 제출, 보고, 조사의 목적은 조정의 권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료 미제출,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해당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한 실적은 없음.

28)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벌금

이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서 볼 때 과잉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0) 등에서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는 점과 행정적 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듯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괄개정안과 같이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국토교통부 의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서 볼 때 과도하고, 검사 또는 출입의 거부·방해·기피는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제재 전환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의4. (생략)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 28. (생략)	제81조(벌칙) ----- ----- -----. 1. ~ 25의4. (현행과 같음) <삭제> 27.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삭제 2의2. ~ 4. (생략) <신설> 4의2.·4의3. (생략) 5.·6. (생략) ③ ~ ⑥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의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4의4.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현행	개정안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9조제1항³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①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②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③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는 중고자동차의 매매질서를 확립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법규 위반이

31)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³²⁾을 과하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행정상의 의무 위반임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완화하려는 것임.

자동차매매업자가 동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외에도 현행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³³⁾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 현행법 상 대부분의 행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³⁴⁾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벌칙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일괄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32)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징역

6. 벌금

3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34)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

구분	조항	내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84조제4항제6호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위반
	제84조제4항제16호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의무 위반
	제84조제4항제18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위반
	제84조제4항제21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휴업·폐업 신고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과태료	제84조제5항제6호2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의무 위반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듯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괄개정안과 같이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국토교통부 의견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여 기존의 과도한 형벌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괄개정안에 동의함.

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일괄개정안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사무소, 비행장 등에 출입하여 수행하는 검사 및 정기안전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양벌규정) ----- ----- ----- ----- ----- 제159조부터 제162조----- ----- ----- ----- ----- ----- -----.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및 제156조-----

현행	개정안
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u><신설></u> 13. ~ 15. (생략) ② ~ ⑦ (생략)	----- ----- ----- ----- ----- -----. 제166조(과태료) ① -----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u> <u>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u> 13.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항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163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32조제2항 및 제3항³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기등을 제작 또는 정비하는 자 등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⁶⁾.

35)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6의2. 항공전문의사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치장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 36)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 해당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한 실적은 없음.

즉, 현행법은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³⁷⁾을 과하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괄개정안은 이와 같은 벌금이 과잉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 운항정지, 업무정지명령, 시정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³⁸⁾하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³⁹⁾, 「항공안전법」⁴⁰⁾ 등에서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37)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6. 벌금

38)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 ⑦ (생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 「철도안전법」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 5. (생략)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출입의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벌금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항공안전활동으로서 수행하는 검사 또는 출입의 거부·방해·기피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철도안전법」의 경우 항공안전 활동으로서의 출입·검사 등과 유사하게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의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철도안전법」 제31조), 안전관리수준 평가,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출입·검사(「철도안전법」 제73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0) 「항만법」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3.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철도안전법」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분석 의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 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예에 대하여 검토하였듯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괄개정안과 같이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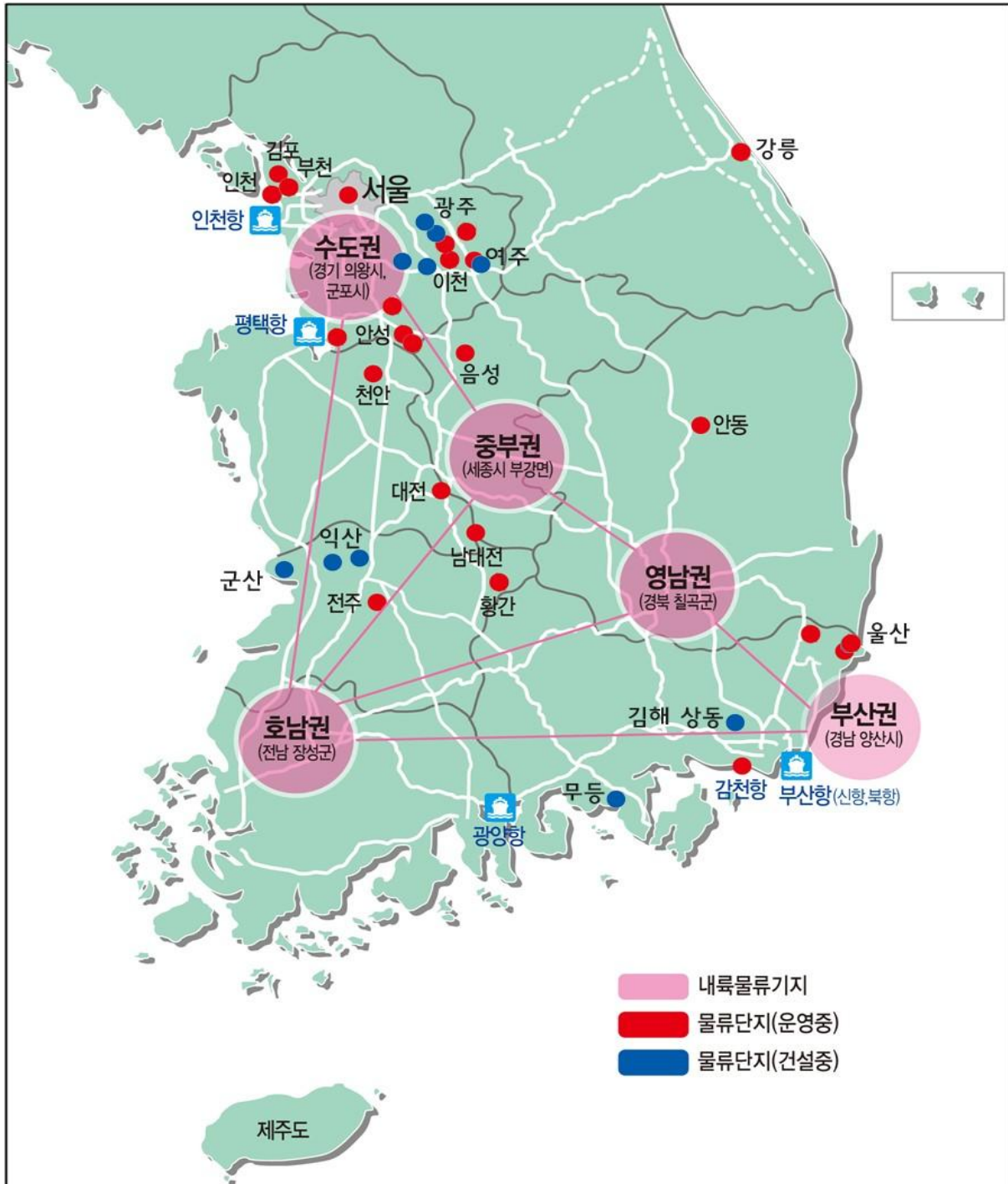
다. 국토교통부 의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서 볼 때 과잉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운항정지, 업무정지명령, 시정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사·출입거부에 대한 벌금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일괄개정안에 동의함.

참고

5대 내륙물류기지 배치도(21.6 기준)

- (현황) 5대 광역거점(수도권(군포IFT·의왕ICD), 부산권(양산IFT·ICD), 중부권(세종), 호남권(장성), 영남권(칠곡))에 총 7개 시설 구축



※ 자료 : 국토교통부